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740

발의연월일: 2024. 9. 6.

발 의 자:송언석・이종배・서지영

김상훈 • 김종양 • 김재섭

김위상 · 김석기 · 박준태

고동진 • 최은석 • 구자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이 불가피했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소방활동은 화재, 구조, 재난·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또한 소방활동의 특성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형의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고의·중과실이 없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어 소방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호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규정에서 고의·중과실을 삭제하고, 소 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방활 동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 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관의 직무수행을 적 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5).

법률 제 호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5 중 "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"을 "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을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5(소방활동에 대한 면책)	제16조의5(소방활동에 대한 면책)
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	
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	
인을 사상(死傷)에 이르게 한	
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	<u>불</u> 가피한
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	것이고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
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	<u>어졌을</u>
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	
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	
수 있다.	,